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목포원도심 길가 일일화〉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I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년 소송구조사건 분석 ㉔

14 • 특집 II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21 • 가정폭력상담실

24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㉕

27 • 인터넷 상담

28 • 결혼과 인생(208) 영화 이야기

4등 _ 김용언

30 • 좋은 책

타인의 해석

31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34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호적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설계를 보며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남편의 폭력 때문에 아이와 쉼터에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남편 앞으로만 나온다고 해서요, 한 푼이 아쉬운데, 이것 때문에 남편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고부갈등과 남편의 외도 등으로 오래 불화했어요. 남편은 지방근무를 핑계로 거의 가출한 상태인데, 생활비라고 찢끔 찢끔 던져 주고, 제가 알바해서 아이들 학원비 같은 것을 메꾸며 살아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알바도 없어지고 생활이 정말 어려워져 긴급재난지원금인가 그것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자기 앞으로 나온 것이라며 넘보지 말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상담소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내담자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전화선을 타고 들려오는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글자이지만 그 글씨를 통해서도 상담소를 찾는 이의 간절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상담소는 우리 사회와 가정의 모습을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 혹은 거울과 같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현상이, 나아

가 그 현상에 따라오는 각종 사회 정책과 제도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 바로바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직접 상담소를 찾거나 전화문의 등을 통해 접하게 된 위와 같은 사례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부계혈통, 장자, 호주, 호적 등 전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인 차별적 관습과 제도를 양성평등, 부부평등에 기반을 둔 법과 제도로 개정하고 개혁하기 위해 앞장서 온 상담소의 역사가 70여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정점이 2005년의 호주제 폐지이며 이는 가족 법개정운동 60년의 결실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되어온 호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마침내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진정한 양성평등과 부부평등을 실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일인일적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호적을 대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 가정은 남편만이 아닌 부부가 주인이 되는 가족관계를 갖게 되었고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서 각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삶을 돌보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러한 사회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해 결과적으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배제되기도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세대 전인 30년 전,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가구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4인 가구로 이들 가구가 29.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약 2천 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1인 가구가 29.3%로 가장 많습니다. 2인 가구와 합하면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가족의 형태라는 면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주민등록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다

양한 가족의 형태가 무척이나 많은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족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인일적을 기본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된 지 십 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이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정책에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소에서 이러한 사례를 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센터 등에 질의한 결과 이혼소송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와 문제가 있어 제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증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처리해 준다는 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지정책 등 행정의 기준을 개인, 부부가 있는 가족이라면 부부 모두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실질적인 양육자를 중심에 놓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가족이라면 무조건 남성 세대주 중심이라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21세기인 오늘 날 아직도 행정의 기준이라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성평등, 부부평등이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이렇게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씁쓸함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접수된 이의신청이 지난 5월 15일 기준으로 7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처 이의신청도 못하고 있거나 이의신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한 이들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 돈을 써야 하는 기간은 8월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 발전하는 길은 정부 도움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러한 이들에 대해 더 각별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담소는 지난 64년처럼 오늘도 앞으로도 이러한 관심과 배려를 놓치지 않습니다.

특 집 I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년 소송구조사건 분석 ② |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

지난 한 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소송구조 사건 분석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미비로

친권자의 역할이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움 겪어

미성년후견인 선임뿐만 아니라 입양, 성 변경 등

위탁가정의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요구도 높아져

친부모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친권상실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신속한 재판 이루어져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혼 등 가정문제 전반을 상담하면서 가정해체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본소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제도의 하나인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던 2004년경부터 가정위탁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위탁가정에 대한 법률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2016년부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현 아동권리보장원)와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소송구조 지원을 시작하였다. 본소의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구조 사건은 2016년 6건으로 시작하여 2017년 8건, 2018년 22건, 2019년 2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본 조사연구는 본소가 2019년 한 해 동안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소송구조 사건(24건)¹⁾의 상담 내용과 법원에 제출된 서면 및 법원

의 재판 내용 등을 토대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위탁현황, 소송사유 및 소송결과와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 가정위탁보호제도와 소송구조 지원의 필요성

1. 가정위탁보호제도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이다.²⁾ 위탁가정이란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으로 대리양육위탁(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위탁(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일반위탁(혈연관계가 없

1) 2019년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구조를 의뢰한 위탁가정은 총 21가정이었으나, 항고심 등을 포함하여 총 24건으로 산정되었다.

2) https://www.fostercare.or.kr/business/?mode=business_01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안내 중 가정위탁보호 참조.

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등의 유형으로 나뉜다. 또한 위탁아동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위탁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전체 가정위탁보호아동은 11,111명이고, 위탁가정은 총 8,965세대이다. 위탁형태에 따른 위탁아동의 수는 대리양육위탁 7,412명(66.7%), 친인척위탁 2,786명(25.1%), 일반위탁 913명(8.2%)의 순으로 나타났다.³⁾ 위탁아동의 연령은 17~19세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기의 위탁아동이 53.8%로 전체 위탁아동의 절반을 넘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의 보호아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성년을 넘어 20세 이상의 경우도 20%를 차지하고 있다.⁴⁾ 위탁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이나 상급학교 진학 등과 관련하여 위탁부모가 감당해야 할 법적·행정적 영역의 일들도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위탁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37.4%,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34.9%, 10년 이상이 17.7%이었다. 이중 일반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30.2%를 차지해 대리양육위탁 또는 친인척위탁의 비율(16.3%, 17.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⁵⁾ 이상에서 보면 위탁가정은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기 전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소송구조 지원의 필요성

- 가정위탁기간의 장기화와 친권자의 부재

가정위탁보호제도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시설양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아 온 것에 비하여 위탁부모의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대리권한 관련 법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⁶⁾

2018년 전체 위탁아동의 평균 위탁기간은 5년 11월로 위

3)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8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27쪽 참조.

4) 앞의 책, 29쪽 참조하여 표 재작성

2018년 성별·연령별 위탁아동

	성 별		연 령							계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명	5,641	5,470	94	576	870	1,365	2,133	3,849	2,224	11,111
%	50.8	49.2	0.9	5.2	7.8	12.3	19.2	34.6	20.0	100

5) 앞의 책, 38쪽 참조하여 표 재작성

2018년 위탁형태별 위탁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대리양육	332	4.5	433	5.8	2,831	38.2	2,605	35.2	1,211	16.3	7,412	100.0
친인척	122	4.4	129	4.6	1,030	37.0	1,023	36.7	482	17.3	2,786	100.0
일반	39	4.3	54	5.9	299	32.8	245	26.8	276	30.2	913	100.0
계	493	4.4	616	5.5	4,160	37.4	3,873	34.9	1,969	17.7	11,111	100.0

6) 반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탁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⁷⁾ 장기간의 가정위탁이라도 부모의 친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탁아동은 주로 부모의 이혼, 부나 모의 사망, 부모의 별거/가출 등 친권자가 부재한 상태로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며,⁸⁾ 친권자가 연락을 끊거나 소재불명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듯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의 공백상태가 벌어지게 되면 위탁아동의 행정서류 발급, 금융거래, 휴대폰 개설, 여권 발급 등에 큰 불편이 생긴다. 그러나 실질적 양육자인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위탁아동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아야 할 보호와 교양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인 친권자에게 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면, 미성년자녀에 대한 보호는 공백상태에 빠지게 되고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친권의 일부제한의 선고,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나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28조).

본소는 위와 같이 친권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위탁아동의 권익 침해와 생활상 불편 등의 문제에 주목하여,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 소송구조 지원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II. 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 소송구조 분석

1.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주요 특성

(1) 성별

위탁부모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4명(19%), 여성 17명(81%)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4배 많았다. 민법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동법 제930조 제1항), 위탁부모 중 위탁모의 신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탁아동의 남녀 성별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2) 연령

위탁부모의 연령은 30대에서 60대에 걸쳐 있는데, 이중 50대(47.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23.8%), 60대 이상(19.0%), 30대(9.6%)의 순이었다. 40-50대 위탁부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소송구조 사례에서 보면 자신의 자녀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중장년층이 시설 등에서 봉사를 하면서 만난 아동을 위탁받는 경우가 많았다.

위탁아동의 연령별 분포는 4-7세 11명(52.4%), 1-3세 5명(23.8%), 8-13세 4명(19.0%), 14-19세 1명(4.8%)의 순으로 나타났다. 7세 이하의 아동이 많았는데, 이는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한 문제들이 취학연령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크게 부각되어 초등학교 입학 전에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탁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친부모의 존재여부

친부모가 있는 위탁아동이 12명(57%), 친부모가 없는 위탁아동이 9명(43%)으로 친부모가 있는 위탁아동의 비율이 더 높았다.

7) 앞의 책, 39쪽 참조.

8) 앞의 책, 46쪽 참조.

〈 표 1.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주요 특성 〉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계			21	100.0
위탁 부모	성별	남성	4	19.0
		여성	17	81.0
	연령	30대	2	9.6
		40대	5	23.8
		50대	10	47.6
		60대 이상	4	19.0
위탁 아동	성별	남아	10	47.6
		여아	11	52.4
	연령	1-3세	5	23.8
		4-7세	11	52.4
		8-13세	4	19.0
		14-19세	1	4.8
	친부모 존재여부	있음	12	57.0
		없음	9	43.0

2. 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에 나타난 가정위탁의 현황

(1) 보호유형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보호유형별 비율은 일반위탁이 18명(85.7%), 대리양육위탁(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2명(9.5%), 친인척위탁이 1명(4.8%)순이었다. 2018년의 경우 전체 가정위탁 중 일반위탁의 비율이 8.2%에 불과한 반면 본소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구조를 신청한 위탁가정 중 일반위탁의 비율은 85.7%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에서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부모나 친인척양육의 경우에는 친부모와 연락하고 있어 친부모의 협조를 받고 있거나, 친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위탁의 경우는 친부모와의 교류가 단절되어 부모의 협조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법정대리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높다는 점이 시사된다.

(2) 위탁기간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은 12-36개월 미만(42.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6-72개월 미만(28.6%), 1-12개월 미만(19.0%), 72개월 이상(9.5%)의 순이었다.

〈 표 2. 가정위탁 현황 〉

위탁현황	구 분	빈도(명)	비율(%)
계		21	100.0
보호유형	대리양육	2	9.5
	친인척	1	4.8
	일반	18	85.7
위탁기간	1-12개월 미만	4	19.0
	12-36개월 미만	9	42.9
	36-72개월 미만	6	28.6
	72개월 이상	2	9.5

(3) 위탁사유

중복적인 사유가 위탁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복수로 분석하였다. 위탁사유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경우가 10명(47.6%), 친권자가 있지만 부모의 가출/연락두절이 된 경우 7명(33.3%), 미혼모시설/입양시설에 맡겨진 경우 6명(28.6%), 부모가 위탁이나 입양을 의뢰한 경우 3명(14.3%), 부모의 사망, 수감인 각 2명(각 9.5%), 부모의 이혼, 학대가 각 1명(각 4.8%)의 순이었다. 본소에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는 친가정의 해체나 친부모의 양육포기, 유기 등으로 친부모의 돌봄이나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3. 위탁사유 〉

위탁 사유 (중복 가능)	구 분	빈도(명)	비율(%)	전체(명)	전체(%)
	부모의 사망	2	9.5	21	100.0
	부모의 가출/연락두절	7	33.3	21	100.0
	부모의 이혼	1	4.8	21	100.0
	부모의 수감	2	9.5	21	100.0
	부모의 학대/방임	1	4.8	21	100.0
	베이비박스(아동일시보호소)	10	47.6	21	100.0
	미혼모시설/입양시설	6	28.6	21	100.0
	부모의 위탁/입양 의뢰	3	14.3	21	100.0

3. 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의 소송 현황 및 결과 분석

(1) 사건별 분류

2019년에 진행한 총 24건을 살펴보면(표 4), 친권자가 없는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이 10건(41.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친권 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이 7건(29.1%), 위탁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위탁부모의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이 3건(12.5%)이었다. 한편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위탁부모가 위탁아동과 더욱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아동이 학교와 사회생활에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 사건도 4건(16.7%)⁹⁾ 있었다.

(2) 소송사유

대부분의 위탁부모가 소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 원인으로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을 꼽았다(17건, 70.8%). 또한

위탁아동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이나 심리적 위축으로 소송을 결심한 경우도 5건(20.9%)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친권자가 아동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아동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는 등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도 2건(8.3%)으로 나타났다.

〈 표 4. 소송 현황 및 소송기간 〉

항목	구 분	빈도(건)	비율(%)
계		24	100.0
사건명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7	29.1
	미성년후견인 선임	10	41.7
	미성년자 입양허가(친양자 입양)	3	12.5
	성변경	4	16.7
소송사유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	17	70.8
	정체성 혼란, 위축	5	20.9
	친권남용	2	8.3
소송상황	종결	16	66.7
	진행	8	33.3
소송기간	3개월 미만	8	50.0
	3-6개월 미만	7	43.7
	6개월-1년 미만	1	6.3
	총 종결사건	16	100.0

(3) 소송결과 및 소송 소요기간

2019년에 진행한 사건 중 2020년 5월 현재까지 16건(66.7%)이 종결되었다. 승소율은 85.7%로 대부분의 사건이 승소하였으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사건은 2건 모두 1심에서 기각되어 즉시항고한 상태이다.

한편 위탁부모들은 양육 중인 위탁아동과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인정받고자 위탁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도 있다. 본소에서 2019년에 진행한 3건의 미성년자 입양허가

9) 2019년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의뢰한 위탁가정은 두 가정이었으나,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즉시항고 하였기에 총 4건으로 산정되었다.

신청 중 현재 2건이 입양허가 결정을 받았고 1건은 진행 중이다.

사건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3개월 미만이 8건(50%),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7건(43.7%)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시간이 걸린 사건은 1건(6.3%)이었다. 소송이 대체로 6개월 안에 종결되었으나, 위탁부모들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체감 소요기간은 1년에 육박하는 것이 현실이다.

〈 표 5. 종결사건 소송결과 〉

종결사건	결 과			승소율(%)
	승소	기각	기타 ¹⁰⁾	
계	12	2	2	85.7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2	0	1	100
미성년후견인 선임	8	0	1	100
미성년자 입양허가/친양자 입양	2	0	0	100
성변경	0	2	0	0

• 승소율 : (승소)/(승소+기각)

III.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 선임 청구의 문제점

1.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의 문제점

민법상 친권상실의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정되어 있다(민법 제924조 제1항). 그런데 위탁아동은 친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혹시 찾더라도 개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나서 이를 청구하

는 사례도 보기 어렵기에 절차의 지연이 충분히 예상된다. 결국 자녀가 직접 친부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별도의 심판을 필요로 한다.

본소는 위탁아동의 복리를 위해 친권상실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도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2016년에 연락 두절된 친권자의 친권상실을 전제하지 않고 미성년후견인 선임¹¹⁾을 청구한 바 있었다. 하지만 원심은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면 친권자가 없거나,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은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본소는 원심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친권자가 생존하는 경우 친권상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성년후견 개시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0. 2. 18. 단독친권자인 친부에게 친권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친권이 없는 친모의 존재를 고려하여, 위탁부모를 바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미성년후견임무대행자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이는 친부모의 친권을 위탁아동의 복리보다 우선시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일관적인 태도를 확인한 후, 본소는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신속하게 선임되는 것이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이후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혹은 친권의 일부제한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가 별도로 필요하고,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이나 친부모 관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법원의 보정을 통해서만 이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원이 부모에게 서류

10) 소송 결과 중 1건은 친부모의 주소지 불명으로 소제기 후 법원의 이송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1건은 위탁가정 내의 문제로 청구가 취하되어, 총 2건이 기타로 산정되었다.

11) 원심: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00177, 항고심: 대구가정법원 2016브1073, 재항고심: 대법원 2017스561.

를 송달하거나 청문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미성년후견인 선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친권자가 없는 경우 기관후견인의 지위

출생 직후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되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은 기존에 생활하던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위탁부모가 위탁아동과 관련된 사무처리를 하려면 매번 보호시설의 장의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또한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은 아동의 기본증명서에 표기되지만, 시설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결과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절차에서 법원에서는 보호시설의 장을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보고 심판 과정에서 보호시설의 장의 후견인 사퇴나 후견인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시설미성년후견법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나타나거나 입양 또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공백을 막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설미성년후견인의 지위는 임시적인 후견인 임무대행자로서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당연히 그 지위를 잃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¹²⁾ 비록 시설미성년후견인이 있더라도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통상 보호시설의 장도 이러한 문제에 동감하여 본소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3. 아동의 성과 본 변경의 필요성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이 아동일시보호소 등에 입소

하게 되면 아동은 입소한 시설장의 성과 시설의 소재지에 따라 성본창설허가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위탁아동의 성과 본은 관례상 시설장의 성과 본을 따른 것일 뿐, 위탁아동의 실제 혈연이나 가족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반면에 위탁가정에서는 위탁아동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중 위탁부모와 성이 달라 겪는 고통이 크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등의 문제도 적지 않다. 본소는 이런 문제에 주목하여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위탁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심판을 2건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건은 2개월 만에 기각되었고, 현재 담당 변호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다.

IV. 결론

위의 분석 결과에서 보면 다수의 위탁아동이 친부모는 존재하나 연락두절이 된 상황에서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이거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및 위축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소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 소송구조 진행과정에서 친부모의 친권상실 등이 선행되어야만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한계에 부딪친 바 있다. 민법 제928조에서는 미성년자녀에게 친권의 공백상태가 발생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사유로서 친권자가 없는 경우를 비롯하여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제924조),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제925조) 등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제927조 제1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역시 친권의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별도의 친권상실의 절차를 밟지 않고 미성년후견인을 바로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12) 임대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법률신문 2018.5.8. 참조.

민법상 조문해석의 견해 차이로 친권상실 등을 거치지 않은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법 제928조의 미성년후견 선임 사유에 “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¹³⁾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친부모의 친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탁아동의 경우, 현재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미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친권상실, 일시정지, 일부 제한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상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의 범위는 매우 좁다. 특히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직접 친권상실 등의 청구를 결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에 위탁부모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⁴⁾

아울러 본소는 위탁가정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을 하면서 전국의 위탁가정들이 가족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친권자의 자녀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들과 친권남용으로 인한 위탁아동의 채무 발생 및 각종 민사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소는 앞으로도 위탁가정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 따른 소송욕구를 반영하여 위탁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률구조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 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 소송구조사례

• 내용

청구인(위탁아동)은 2011.경 출생하였고, 청구인의 모는 2012.초 가출한 후 현재까지 청구인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

이 전혀 없다. 청구인의 부는 생후 1년이 안된 청구인을 집에 홀로 방임하였고, 주변인들의 신고로 청구인은 2012. 3.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였다. 청구인이 생활하는 양육시설에 근무하던 미성년후견인후보자(위탁모)와 남편은 퇴사한 후에도 시설에 있는 청구인을 만나거나 휴일에 집에 데려와 재우는 등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였고, 2016. 11. **군 수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청구인을 양육해오고 있다. 청구인의 부는 2016. 봄 양육시설에 전화하여 청구인을 후원하겠다는 거짓말로 청구인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은행에서 청구인의 예금을 해약하고 약 15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가져가 버렸다. 그러나 경찰은 부가 청구인의 친권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 명의로 휴대전화, TV, 인터넷을 개통하고 현재 약 300만원에 이르는 요금을 연체하고 있다. 이에 위탁가정으로 계속 요금납부통지서가 오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핸드폰도 개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위탁부모는 청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 진행경과

위 사건은 본소 김민선 변호사가 진행하였는데, 위탁부모로서는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받지 못하여 친부모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단계에서 2019. 10. 자녀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친부모의 이름과 주소가 밝혀졌고, 2019. 12. **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본소 백인 변호사단의 박성미 변호사가 2020. 1.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2020. 5. 현재 청구인 모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 소재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만 수차례 나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최수진 상담위원

13) 김상용,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 방향 자료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17. 11. 3), 36쪽.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구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 바 있다(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353, 2019. 9. 5. 참조).

14) 김상용, 위의 글, 37쪽.

특 집 II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유류분 제도 개정안 관련*

배 인 구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순호 2010. 1. 28.

유류분 규정 위헌제청결정

가.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2010년 11월경 사망한 피상속인인 망인의 아들인 b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b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대습상속인이다.

원고들은 미국에 이민하였던 이유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의 상속분에 관한 상속회복 청구를 하고, 망인과 피고들이 유류분권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망인이 전재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다투어,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인 민법의 규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다. 위헌제청 이유

- 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이 소유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누리는 자유는 이와 같은 재산권 보장의 핵심이다. 국민 개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든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민법에 정해진 유류분 제도는 이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서, 유류분 제도가 그와 같은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 ②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대하

* 지난 5월 29일 직원재교육을 겸해 열렸던 본소의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된 주제발표 원고이다.

여는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부부 공동생활에 따른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및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②-1 가족 구성원이 일가를 이루고 공동의 노력으로 가산을 형성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일반적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였던 과거에는 양성평등의 견지에서 위와 같은 유류분 비율의 합리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면도 있었으나, 가(家)를 중심으로 한 전근대적 가족제도가 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남녀가 갖는 자녀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현재에 유류분을 통하여 자녀들 사이의 양성평등이 보호되는 면은 미미하다. 도리어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과도한 유류분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②-2 유류분이 가족 또는 친족 사이의 부양을 촉진하여 가족제도를 보호하는 면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에서라면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간에 피상속인의 부양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인정하면 충분하다. 그렇지 않고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유류분은 흔히 부양에 필요한 적정한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할 수밖에 없다.

③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절대적인 가액이 제한되지 않고 법원이 그 가액이나 비율의 결정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관여할 여지조차 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나 부양에 필요한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구체적인 개별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아무런 기여가 없고 부양의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흔히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불로소득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그 의사에 반하여 재산 소유자를 강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유류분 제도는 결국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갈수록 사회적 필요가 커지고 있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기부에도 큰 장해가 되어 오히려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일면이 있음을 특기할 필요도 있다.

⑤ 민법 제1114조 단서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사망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의한 것이라도 무한정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심지어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상속개시 시인 피상속인 사망 시에 소급하여 실질적으로 그 경제적 효과가 일부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⑤-1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속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생존 중의 기간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피상속인의 자유까지도 소급적으로 침해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생전 처분과 이에 기초하여 오랜 시간 형성된 경제적·법률적 관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다.

⑤-2 더욱이 실제 소송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과거 수십 년에 걸친 재산형성의 과정이 모두 심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심리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과정이 지난할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가족 구성원 사이의 불화가 더욱 심화하고 결국 극단에 이르게 되어 가족 공동체가 사실상 와해되는 수많은 사례가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⑥ 유류분 제도의 도입과 내용에 관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는 점을 수긍하더라도, 유류분에 관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및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정도와 방법을 현저하게 벗어나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재산 처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원혜영 의원이 발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유류분이 인정되어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했는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음.

유류분 제도는 1977년 신설된 제도로써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재산을 상속인을 위하여 남기도록 하려고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러한 유류분의 부양적 기능은 고령화 시대, 핵가족화 등으로 오늘날 상당 부분 상실되었음.

특히 최근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활동 등에 기부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의 유류분 제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유지(遺志)가 아예 실현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실현될 위험이 있음.

또한 자녀가 피상속인과의 유대관계를 고의로 거절하는 경우에도 유류분 제도에 의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불합리

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유산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 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함(안 제1112조 제1항 제1호).
- (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 범위에서 제외함(제1112조 제1항 제3호·제4호).
- (3)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그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112조 제2항 신설).
- (4) 유류분의 사전포기 제도를 도입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2조의2 신설).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112條(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相續人의 遺留分은 다음各號에 依한다.	第1112條(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①	_____	_____
1.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2分の1		1. _____	_____	3분의 1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被相續人의 直系尊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3分の1		〈삭 제〉		
4. 被相續人의 兄弟姊妹는 그 法定相續分의 3分の1		〈삭 제〉		
〈신 설〉		②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그 주소, 거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써 제1항제1호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다.		
		〈신 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12조의2(유류분의 포기)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속개시 전에 제1112조 제1항에 따른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류분의 포기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유류분 규정 개정의 필요성

가.

최근 고령화의 영향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생존 배우자의 부양이 문제되고 있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같이 일군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사망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어도 생존에 지장이 없는 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생존에 절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증여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특히 자녀들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배우자 상속권 및 유류분권의 강화가 강조되는 사회 변화 기조와 유류분 제도의 존재의의로 알려진 상속인 부양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유류분 비율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유류분 비율

① 유언자유 원칙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상속에서 배제되는 법정상속인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런 상속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피상속인 사후에 이들에 대한 부양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류분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수명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들이 성인으로서 독립적으

로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커졌고, 반명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양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을 1/3로 개정하는데 찬성합니다. 다만 같은 취지에서 법정상속인이 미성년 자녀들인 경우 유류분 비율은 1/2로 유지해야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②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거나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또 피상속인은 직계존속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존재근거를 상속인의 부양에서 찾게 되면 고령의 직계존속, 특히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던 직계존속의 유류분권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계존속을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참고로 프랑스는 최근 직계존속을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하였고, 독일과 일본은 직계존속을 유류분권리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 현대 사회에서 형제 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형제 자매를 배제하고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역시 상정하기 힘듭니다. 물론 유류분제도가 도입되던 시기에는 동생의 학업을 위해 진학을 포기한 언니, 형님이 있었고, 장남을 위해 희생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유형보다는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형제 자매가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를 우선 상상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형제 자매가 법정상속인이지만 과연 피상속인의 재산에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위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 참고로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형제, 자매의 유류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유류분 결격자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특정 상속인이 너무 많은 비행을 저질러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부도덕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법은 제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민법이 정하고 있는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외에도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속인이라고 하

기에는 부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남편 지내던 자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부모가 병에 걸려 입원했는데 들여다보거나, 보살피지 않으면서 오히려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부도덕한 자녀가 있다면 그런 자녀에게 상속을 하고 싶은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유류분의 사전 포기 외에 유언으로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응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경우 및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그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라는 내용은 그 자체도 모호할뿐더러,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상속인들 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하게 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차라리 민법의 기여분 규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물론 대법원은 5. 상당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¹⁾

- 1) 위 전원합의체결정의 요지 :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하였다면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상 결정은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서 특별한 부양행위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신분관계로부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률상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행위는 법적 의무의 이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이 특별한 기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 결정의 다수의견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는 민법 제1008조의2의 문언상 가정법원이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기여분을 위와 같이 새기는 것은 논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견도 인정하듯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에 더하여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하여 긴 노년기에 건강상태마저 악화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처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민법이 예정하지 못하였던 정도로 장기에 이를 수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의 공적 부조나 사회복지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어 피상속인이 노년기에 긴 투병생활을 할 때 그와 동거하며 간호하는 일은 결국 배우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하여 부양한 사정을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기여분결정 심판 실무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 다수의

라. 유류분의 사전 포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개인적인 재산권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자유이고, 사전에 이를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포기를 허용하면, 피상속인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일이 생길 우려가 있고, 민법에서 상속제도를 규정한 취지, 상속법의 이념에 비추어 특히 배우자상속권의 확립과 자녀균분상속의 본질을 상실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판례 역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거나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 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192 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 개시 이후 상속 포기는 가능하지만 상속 개시 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에도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의 사전포기제도는 1948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유는 가산의 분산 방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대 상속법의 이념이 가산(家産)보다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우선하는 점에서 보면 유류분의 사전포기제도는 이에 배치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일정 정도 재산을 분여해주어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상속인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상속재산이 생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도록 하고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유류분의 사전 포기는 오히려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유류분의 사전포기제도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부부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만한 재혼 생활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²⁾

이 외에도 피상속인이 잔여 재산 전부를 공익을 위해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유류분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면전에서 아무 말도 없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후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일본 가정재판소는 유류분 사건 포기의 허가 기준으로 ① 유류분 권리자가 진의에 의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지, ② 유류분을 사전 포기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③ 포기에 따른 재산 제공을 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특히 ①과 ②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마.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를 10년으로 제한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헌제청결정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민법 제1114조 단서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견이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배우자가 11명의 자녀들과 공동상속을 하게 되어 법정상속분은 12%(3/25)에 불과하고,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못미치는 반면 노령의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하며 간호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 다수의견의 지적을 고려하면 상속인들 모두 부양하지 않을 때 홀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노령의 배우자, 특히 여러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하여 법정상속분이 20%도 되지 않는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은 법률이 그 입법 취지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기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 결정은 부부,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서로 회피할 때 그런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사망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의한 것이라도 무한정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심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의 모든 재산 변동을 조회하려고 하고, 그 결과 분쟁과 갈등의 정도가 심화됩니다.

이에 반하여 일본 민법 제104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에 1년 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고, 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10년 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일응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10년간으로 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민법 제2325조는 더 과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에서 의무분보충청구권] (1)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를 한 때에는, 의무분권자는 의무분의 보충으로 증여된 대상이 상속재산에 더하여졌을 때 의무분이 증액되었을 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비재는 증여 당시에 가졌던 가치로 고려된다. 다른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고려된다. 그것이 증여 당시 더 적은 가치를 가졌다면 그것만이 고려된다.

(3) 증여는 상속개시 전 첫째 증여는 전액으로, 그 이후 상속개시 전 매해 그때그때 10분의 1씩 더 적게 고려된다. 상속개시 당시에 증여된 대상의 급여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증여가 행해졌을 때에는, 그 기간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는 기산하지 아니한다.

바. 결어

‘유류분 제도의 현대적 의의’ 라는 논문에서 박세민 교수는 “국가는 입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성이 확보된 적절한 ‘행동모델’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부양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유류분과 기여분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어떤 행동모델을 제공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2) 일본의 문헌에 기재된 재혼부부의 부부재산계약 등기례

부부재산계약 (도쿄법무국 제58호 昭和 62년(1987) 10월 28일 58호)
제1조 부부의 재산 중 다음의 것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 ① 부의 재산(이하 부의 특유재산이라 한다) 1. (재산표시 생략) ② 처의 재산(이하 처의 특유재산이라 한다) 1. (재산표시 생략) ③ 위 ①, ② 외의 재산은 모두 부부의 공유로 한다. 제2조 혼인 중 부 또는 처가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한다. 제3조 ① 부의 특유재산은 부의 사망 후, ○○(부의 자)에게만 상속된다. ② 처의 특유재산은 처의 사망 후, □□ 및 △△(처의 자)에게만 상속된다. 제4조 부 또는 처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인신고 후 신속하게 각각 민법 제1043조 소정의 유류분 포기의 절차를 가정법원에 하고, 부는 그 특유재산을 ○○에게 상속된다는 취지로 유언을 하고, 처는 그 특유재산을 □□ 및 △△ 두 명에게 상속된다는 취지의 유언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가정폭력상담실

행위자 상담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온전히 수용하고
음주 등 문제 요소를 해소해야

사건번호 2018버5** 상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4회, 전화상담 1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등 총 17회 실시

상담기간

2018. 12. 7. ~ 2019. 6. 10.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자녀 1명(딸, 10세)이 있으며 2016년 이혼하고 동거 중에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8년 1월 사건당일 술에 취해 귀가한 행위자는 이를 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한 것에 대해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딸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따라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수회 때려 안면부위 안와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피해자도 행위자와 함께 상담을 받도록 결정이 내려졌다.

본 사건 이후 행위자와 피해자는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행위자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다. 피해자가 딸을 키우고, 행위자는 월 170~1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1~2달에 1회 면접교섭을 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유흥업소에서 운전일을 하여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근무를 하는 관계로 월요일 오후 개별상담 중심으로 상담 계획을 수립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셔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건 이후에는 술을 조절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행위자는 대화법을 다룬 상담회기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경멸 등 폭력적인 대화를 하였음을 인식하고 반성하였다. 그리고 부부의 불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재인식하고, 성격유형검사를 통하여 자신 및 피해자의 성격을 이해하였으며 그로 인한 갈등에 대하여도 인식하는 기회를 가졌다.

본 사건의 재판부는 행위자를 피해자와 함께 6개월간 상담위탁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 이후 행위자와 헤어졌고

재결합의사가 없으며, 생업 상 상담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상담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에 의하면 행위자는 딸의 양육비를 잘 지급하였고, 집에 와서 딸을 면접교섭하며 피해자도 그 때 행위자를 만났다.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고, 딸과 둘이 사니 홀가분하고 좋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외로움이 가장 힘들다고 하면서 재결합을 하고 싶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내주지 않아 안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결합하였다가 다시 잘못될까봐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고, 딸의 요청으로 피해자 및 딸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상담자는 행위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피해자를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음주 문제 등 피해자가 지적하였던 문제요인이 해소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해 대화법 및 딸과 지내는 방법 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2*** 폭행 / 2018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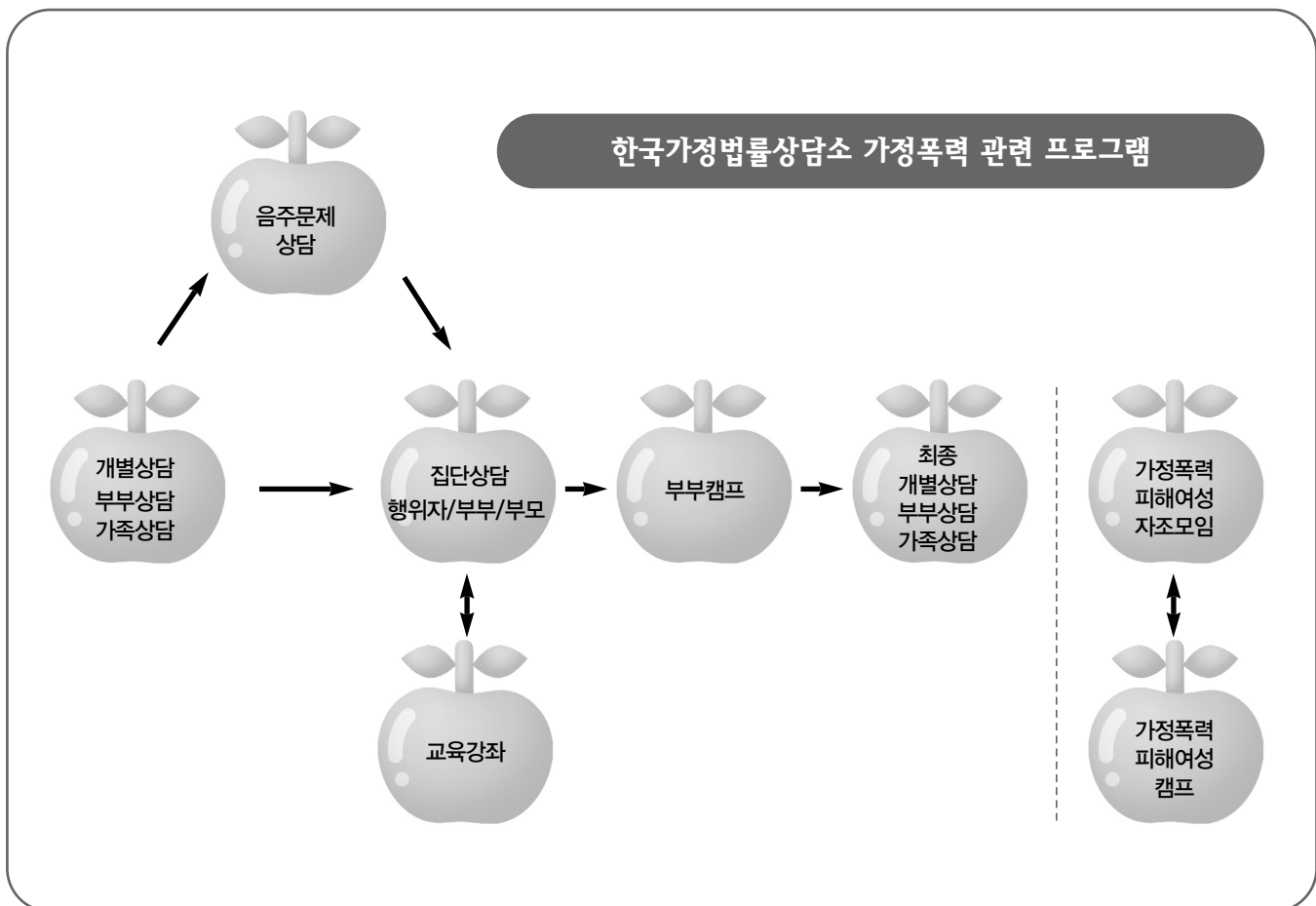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4회,
집단상담 5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1회, 자조모임 3회

부부상담 3회, 부부 부부집단상담 4회 등 총 29회 실시

상담기간

2018. 12. 7. ~ 2019. 6. 12.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21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녀 1남(20세, 17세, 14세)이 있다. 남편의 폭언, 폭력, 외도 등을 이유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여 2018년 6월 사건당일, 협의이혼신청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다. 남편은 이 과정에서 높임말을 쓰지 않았다며 아내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집에서 나가려는 아내를 침대에 밀치고 목을 조르고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리며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아내는 이에 대하여 남편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부부가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남편은 40시간 수강명령과 6개월간 상담위탁을, 아내는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본 사건 후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이나 별거를 요청하였는데, 남편이 집을 나와 지내는 것을 선택하여 별거하게 되었다. 부부의 의사를 점검한 결과, 남편은 혼인유지를 원하였지만 아내는 이혼의사가 확고하였다. 이에 초기에는 부부를 분리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후반기에 부부집단상담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만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부부집단상담에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부부집단상담에서 아내는 남편이 결혼생활동안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대했고 양육방식도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에 자녀들도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였으며 이혼할 결심이라고 하였다. 현재 아내는 자녀 3명 및 시어머니와 살고 있으며 남편이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많이 한 탓에 큰 딸은 아버지와 관계가 매우 나쁜 상황이었으나 남편은 딸이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여 바로잡으려고 했다고 하면서 자녀의 행동문제를 아내 탓이라고 비난하였다. 남편은 자신이 잘못된 행동의 많은 부분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며 현재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고, 반성적 태도보다는 변명을 하면서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남편은 아내에게 그동안 고마운 것이 많았다는 말도 하였으나 아내는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부집단 종결 회기에서 아내는 상

담에서 배운 것은 많지만 자신과 남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하였고 남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다.

종결상담 시까지 남편은 재결합과 이혼 사이를 오가며 아내의 이혼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내는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감정, 경제 문제 및 집이 팔리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 해결 과제 등이 남아 있어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남편에게 아내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면 재결합이 어렵다는 점과 현 시점에서 어떠한 선택이 향후 아내 및 자녀들과 관계개선의 여지가 있는 길인지 숙고할 것을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2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족법개정운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제1차 가족법개정(1948~1962)

일제강점기 동안 억압과 굴종 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주권재민과 자유평등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법전의 제정이란 민족해방의 역사적 전개에서 참으로 중대한 과제였다.

조선 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1912년부터, 1959년 신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구민법은, 당시 일본의 민법과 조선시대 이래의 관습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대개가 우리 헌법의 정신과 모순되었으며 특히 친족편과 상속편의 제정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은 전문 및 제5조와 제8조, 제20조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정신에 부합한 법전을 제정하기 위하여 1948년 9월 15일 대통령령 제4호 법전편찬위원회 직제를 공포하였다.

법전편찬위원회는 민사, 형사의 기초 법전과 기타 소송행형 등 사법법규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기초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7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은 판사, 검사, 변호사, 행정 각 부문의 법률사무 담당직원, 법과대학의 법률학 교수 및 기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하게 되어 있었다. 이 직제에 따라 1949년 3월 9일 법전편찬위원회가 발족했고, 위원장에 김병로 대법원장이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에 이인 의원이 그리고 각계에서 70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편찬의 순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해오던 민법전의 기초는 1952년 7월 ‘법전편찬위원회’ 김병로 위원장의 신조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동성동본 불혼을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의 근거로 삼고, 부계혈통주의 계승에 가족제도 확립의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남녀평등은 부계주의의 양속을 해치는 서구지향적 사고이므로 이를 지양하자는데 그 입법 취지를 두었던 것이다.

민법 초안에 나타난 여성 지위에 관한 차별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친족편에서는 1)남편의 전처 소생이나 혼외 출생자와는 계모 및 적모 관계가 친자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 점 2)친족 범위에서 남편 측을 아내 측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한 점 3)처가 남편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을 입적시킬 때는 남편 집의 호주 및 남편의 동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의를 필요로 하나 남편이 혼외 출생자를 입적시킬 때는 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점 4)여 호주는 호주 상속을 할 양자를 입적한 때에는 호주권을 내놓아야 하고 여 호주가 혼인하면 폐가해야 하는 점 5)부계혈통만을 중심으로 하는 동성동본 불혼 조항 6)부부동거 장소를 남편의 주소지나 거소로 지정한 점 7)부부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하나 소속 불분명한 재산은 남편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하는 점 8)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남편으로 한 점 등이다.

그리고 상속편에서는 1)딸의 호주 상속 순위가 최하위인 점 2)출가한 딸의 재산상속은 제1순위에서 제외된다는 점 3)남편은 처의 재산을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지만 처는 남편의 재산을 직계비속 및 남편의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하도록 한 점 4)함께 재산을 이룬 처의 상속분이 호주 상속자보다 적고 기타 직계비속 및 남편의 직계존속과 균등하게 한 것 등이다.

법제상의 여성차별 소식을 1952년에 처음 듣게 된 이태영 변호사는 이 사실을 여성문제연구원의 황신덕 원장과 대한 YWCA연합회에 알리고 여성단체가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여성단체들을 연합하여 '민법 중 친족 상속편 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관계 요로에 제출하였으나 반응은 냉담할 뿐이었다.

당시 국회의 민법소위원회는 심의 기준으로 심의 요강을 발표하였는데, 이 요강은 법전편찬위원회의 원래 요강과 달리 변혁적인 규정으로 주목을 끌기도 했지만 여전히 남

녀차별적인 조항을 갖고 있었다. 신민법 제정에 대한 국회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여성단체들은 그간 전개해 온 활동의 전략을 전환해야 할 필요를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27개 여성단체가 모여 심의 요강에 대한 전국여성단체 연합회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사법연구회 등 각계에서 민법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법안심의에 반영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종근 대한변협회장은 처의 행위 능력에 관한 제한 철폐, 친족범위 축소 및 동성동본 불혼제도 철폐, 호주상속과 재산상속 구별, 서양자제도 문제 등은 우리의 생활양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대한 반대의 뜻을 시사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변호사계의 태도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민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는 가운데 여성들의 입장과 가장 날카로운 대립을 보인 단체는 유도회로 1956년 11월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유림들과 여성단체들이 정면으로 부딪치게 되었다. 이 공청회에서는 정광현 교수의 '민법제정에 헌법정신을 살리라'는 요지의 의견부터 법조계·학계·유림·여성단체·일반인·대학생 등 각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발표되었다. 정교수는 친족상속편의 남계혈통 고집, 남존여비의 규범, 호주-가족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주종 관계적 규범 등은 엄연한 위헌입법이며 세계 인권선언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역설했다.

공청회 후 이태영 소장 역시 여성계를 대변하여 동성동본



불혼제도의 부당함을 공격하였다. 이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요 논점이 호주제도에 관해서도 가정학회장을 맡고 있던 표경조 교수 등은 호주상속상의 남녀동등권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가장 극단적인 의견대립을 보인 쟁점은 동성동본혼인의 금지 여부와 호주 상속 및 재산 상속에서 남녀의 지위 문제로 유림과 이들의 지지세력 측에서는 남자를 우선으로 하는 원안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려는 주장을 폈다.



공청회 이후에 여성단체는 유림 등 사회 특정단체로부터 무수한 비난과 공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큰 힘과 용기를 내게 되었다. 원래 원안 지지 입장 처음부터 논리를 결여한 억지에 가까운 명분론임을 잘 알고 있던 터에 여론조성의 기회가 된 공청회를 통해 정의 평등 실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청중이 여성단체에 보내던 박수와 격려는 남녀평등의 이념이 서서히 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하였다.

공청회 이후 1957년 11월에야 여성단체의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채택되지 않았고, 그 해 12월 국회의사당 앞의 시위와 민의원 의장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청원서 제출 등 법률 공포를 목전에 둔 마지막 노력이 있었을 뿐이다.

이 당시 양성 평등한 가족법 제정을 열망하던 여성계의 노력과 좌절은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내려온 봉건적 사고방식과 민주적 사고방식의 불가피한 시대적 충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대는 여성들이 자기의 인격적·사회적 지위가 국가·제도적 차원에서 명백히 차별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불평등한 법적 현실에 드디어 눈을 뜨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여성계와 가족법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도해 나갔던 민법 제정에 관한 건의서 제출, 공청회 개최 등의 활동은 남존여비라는 고루한 사상을 배경으로 한 민법초안 지지 측의 허구성과 비민주성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계몽과 여론화라는 기반을 얻을 수 있었다.

196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신민법은 많은 여성운동가들

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정 당시부터 헌법이념에 충실하기보다는 관습존중론에 치우쳐 낡은 전통과 타협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입각한 평등한 가족제도를 천명한 헌법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었다.

1960년 신민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군사 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여 법을 개폐하기 시작했으며, 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1962년 '호적제도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호적제도에 대한 대체 제도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호주제를 존치시키면서 즉 호주의 장남의 분가를 금지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차남 이하는 혼인신고를 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분가하도록 강제하는 '법정 분가제도'를 신설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1962년 법정분가제도가 민법에 신설되었고, 이것이 제1차 가족법개정이었으나, 이와 같이 헌법이념을 살리지 못하는 관습과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가족법은 조만간 개정될 필요성을 가진 채 일종의 과도기적 산물로 태어났다. 이러한 요소는 1960년대와 70년대에도 계속 여성의 법률적 사회적 지위를 불평등하게 속박하고 있었다.

여성을 가정의 예속물로 간주하여 아무런 명문화된 지위조차 갖지 못하게 했던 일제 강점기 시대나 민법제정 이전의 상태에 비한다면 당시의 가족법은 그나마 여자에게 어느 정도 대우를 한 셈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여전히 인간평등이라는 이념에 도달하려면 까마득한 실정이었다.

편집부



Q ▶▶▶

30대 회사원으로 결혼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다가 자녀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아내가 4세 아들의 육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아내와 저는 사사건건 의견충돌을 하며 다투는 일이 잦습니다. 저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한데 집안일을 시키고 아이랑 놀아주라고 잔소리를 하니 짜증이 나서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몇 번 욕을 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져서 부서지거나 깨진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폭력을 쓰지는 않았지만 아내는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서로 잘 지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제가 폭력을 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육아에 지친 아내는 우울증도 있는 것 같은데 상담소에서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남편 입장에서는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집안일과 자녀를 돌봐야 하기에 두 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결혼생활 1년 이상 5년 미만인 이 시기는 육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때입니다.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원하는 반면, 남편은 가정과 사회에서 학습한대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상호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갈등상황에서 욕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태도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욕을 하는 정서적 폭력, 물건을 집어던져서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가정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던 처벌이 점차 확대되어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 역시 아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께서 아내와 잘 지내고 싶다면 먼저 폭력행동을 인정하고 욕설과 폭력으로 상처받은 아내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도록 권합니다. 아내와 같이 심리적으로 힘든 가정폭력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온 전문 상담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학 교수, 심리상담가 등에 의해 개별 심리상담 및 부부(가족)상담, 음주문제 상담, 부부 집단상담, 자조모임, 정신과 치료, 심신 회복캠프 등으로 진행됩니다.

부부가 서로 잘 지내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한 첫 단추는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것입니다. 잘 알기 위해서는 내 이야기만 하기 보다는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할 때는 표정과 말투를 부드럽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면 두 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서로 잘 지내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 가실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차연실 상담위원

결혼과 인생 (208)



4등

감독 정지우

출연 유재상, 박해준, 이항나, 최무성



초등학생 준호(유재상)는 수영에 뛰어난 재능이 있지만 대회만 나가면 언제나 4등을 차지한다. 차라리 꼴찌라면 금방 포기할 텐데, 이 애매한 성적 때문에 엄마(이항나)는 안달을 부린다. 결국 엄마는 새로 소개받은 수영 코치 광수(박해준)를 데려오고, 16년 전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던 국가대표 출신인 광수는 무조건 준호의 성적을 올리겠노라 호언장담을 한다. 사실 광수는 선수 시절 심한 체벌을 견디지 못해 수영을 포기한 기억이 있지만, 지금의 그는 과거의 코치들처럼 폭력과 억박지름을 똑같이 남발하며 제자들을 가르친다. 얼마 뒤, 드디어 수영 대회에 출전한 준호의 기록은 1등과 0.02초 차이인 2등이다. 오랜만에 밝은 분위기 속

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하던 자리, 아빠(최무성)는 준호의 온몸이 멍투성이라는 걸 알게 된다.

“난 준호 맞는 것보다 4등 하는 게 더 무서워.” <4등>에서 가장 통렬한 대사는 이것이다. 아들이 코치에게 맞아가면서 운동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전까지 해맑기만 했던 아이의 얼굴에 점점 그늘이 드리워지고 배출하지 못하는 분노가 온몸에 쌓여간다는 걸 모르는 척했던 이유. ‘어떻게 해서든 1등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과정은 눈 감을 수 있다’는 마음.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열망이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아랑곳없이 나의 성공만이 중요하다는 욕심이든, 그런 종류의 마음이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엄청난 속도로 빠른 성공을 뒷받침한 추진력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4등>의 준호 엄마가 “4등! 뭐가 되려고 그래? 너 인생을 꾸리꾸리하게 살 거야?”라고 소리 지를 때, 가족이 기주의와 성과주의가 결합된 그 거대한 열망은 아직 닥쳐오지 않은 아이의 ‘미래’를 ‘현재’의 기준에 맞춰 폭력적으로 예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허영심이 ‘악’은 아니지만, 그 허영심이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체벌 혹은 돈 봉투)과 결합할 때 한 사람을,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다.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길을 일찍 선택했을 때, 단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에 매진할 수 있는 삶은 주변 사람들의 희생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좋아하는 이유를 타인들이 지정할 때, 그 타인들이 부모라든가 교사, 지도자처럼 아이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일 때, 희생의 주체는 아이로 바뀌어간다. <빌리 엘리어트> 같은 영화와 비교해보자. <빌리 엘리어트>는 아이의 재능과 꿈이 일치할 때 그 높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돕는 가족들의 이야기이자 천재와 범인의 간극을 가슴 아프게 인정하고 천재의 미래를 위해 범인의 현재를 유보하는 현실적 한계에 대한 절절한 이야기다. <4등>은 아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혹해질 수 있는지, ‘좋아하는 것’을 강요당하다시피 지정받는 게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 드러낸다. <빌리 엘리어트>의 1980년대 초반 대처 시대 탄광촌보다도 <4등>의 21세기 한국 서울이 더 참담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 1등을 해야 한다’는 영화의 무난한 결말이 다행스러우면서도, 그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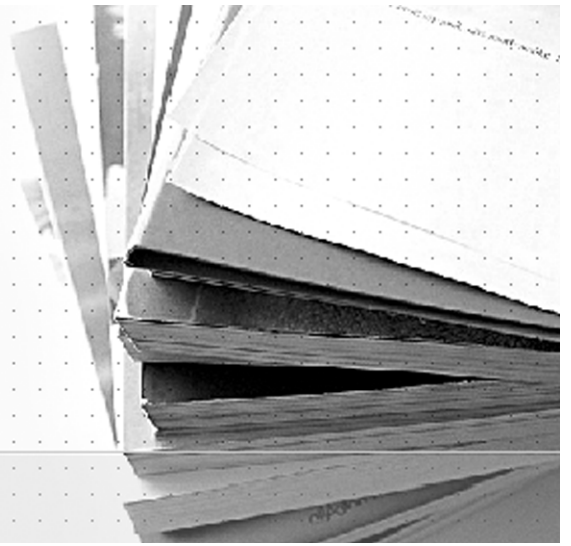
‘재능 있는 아이가 한국에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우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

2014년 작품인 <4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획 및 제작을 맡은 12번째 인권영화다. 운동선수, 그것도 초등학생에게 ‘인권’이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은 이들 모두에게 <4등>을 권하고 싶다.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성인들이 얼마나 하찮고 못났는지, 고요한 물속에서 유명하는 주인공 준호의 기쁜 얼굴 앞에서 그를 닦달하고 몰아세우고 그의 재능을 통해 뭔가를 대리달성하려는 성인들의 폭력적인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절감할 수 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준호로 대변되는 아이들 모두에게 미안했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좋은 책



타인의 해석

당신이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말콤 글래드웰 지음

김경일 감수 • 유강은 옮김

김영사, 2020



퇴근길, 라디오에서 '오해가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멘트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이 책 『타인의 해석』을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공감이 갔을 수도 있다. 책을 읽으며 '그래서 결국 타인은 지옥인 건가'라고 여러 번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은이 말콤 글래드웰은 2015년 1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일어난 샌드라 블랜드 사건에 충격을 받아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인 샌드라 블랜드는 취직 면접을 위해 몇 년 전 졸업한 대학을 찾았다가 차를 몰고 도로에 나선 참이었다. 사건은 백인 남자 경찰관이 차를 멈춰 세우면서 시작된다. 차선 변경 깜빡이를 켜지 않았더라면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담뱃불을 붙였다. 감정이 고조되고 말싸움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경찰관이 샌드라 블랜드를 차 밖으로 끌어냈고 그로부터 사흘 뒤, 샌드라 블랜드는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바로 지금은 미국에서 일어난 백인 경찰의 과잉 단속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더 어처구니없게 생각된다. 비단 이 나라뿐일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말콤 글래드웰은 "낯선 이와 이야기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낯선 이와 대화의 틀어지면서"이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타인을 오해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는 타인이 정직할 것이라고 가정하며 둘째, 타인의 태도와 내면이 일치한다고 착각하고 셋째, 행동과 결합하는 맥락의 중요성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책은 흥미진진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CIA에서 쿠바를 위해 일해 온 스파이가 십 수 년 만에 드러나기

까지의 과정, 판사가 얼굴을 드러내기 거부한 이슬람 여성의 재판을 표정을 볼 수 없어 자신의 판단을 저해한다며 보류했지만 사실 판사들의 판결은 SI 보다 부정확하다는 것, 그리고 실비아 플래스의 자살에서 보듯 많은 자살 사건들이 그 사건을 용이하게 한 어떤 사회적 사실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녀의 돌보미를 구할 때,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채용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혹은 그녀의 실체를 알 수는 없으며 실비아 플래스가 지금처럼 일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도시가스 시대에 살았다면 그녀는 좀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아웃라이어』의 저자로 익숙한 말콤 글래드웰은 경영사상가이며 베스트셀러 저술가이다. 영국에서 태어나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자랐고, 토론토 대학교와 트리니티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경제부/과학부 기자, 뉴욕 지부장을 지냈고, <뉴욕>의 기고 작가로 일해 왔으며, 1999년 이 시대 최고의 마케터 중 한 명인 론 포페일(Ron Popeil)에 대한 기사로 '내셔널 매거진 어워드'를 탔다. 2005년 <타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2008년 <월스트리트저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10인'에 선정되었다.

"낯선 이와 이야기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만약 낯선 이와 대화의 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낯선 이를 비난한다." 새겨돌만한 통찰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서로에게 낯선 이이고 그래서 비난하는 이가 될 수도, 비난받는 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숙 현 편집부장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2020년도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직원재교육 견해

본소의 2020년도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상용)가 지난 5월 29일 본소 8층 교육실에서 개최되었다.

직원재교육을 겸해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는 객배희 소장을 비롯해 본소 직원들과 본소의 가족법개정자문위원인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대표 변호사),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전문센터장), 차선자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인구 변호사의 '유류분제도 개정안 관련' 발표, 김상용 교수의 '유류분 개정시안' 설명과 본소에서 진행 중인 유해인도 사건에 관한 현소혜 교수의 의견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회의는 지난 2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미루어져 이번에 열리게 된 것이다. (관련사진 2면)

본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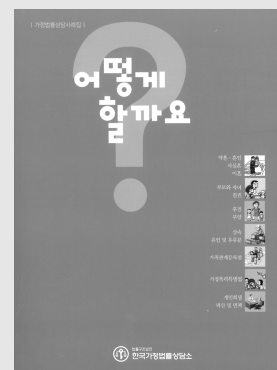
「어떻게 할까요」 2020년 개정판 발간

본소에서는 1976년부터 가사사건 전반에 관한 상담사례집인 「어떻게 할까요」를 발간해 왔다. 이 책은 상담소에서 상담을 한 많은 사례들 중 가족구성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약혼, 혼인, 이혼, 친자 및 양자, 후견 및 부양, 상속, 유언 및 유류분, 가족관계등록, 가정폭력관련, 파산 및 면책 등 가정문제와 관련된 전 영역

을 망라하고 있다. 그동안 이 책은 상담소를 찾았던 많은 내담자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과 단체, 학교 및 전문가 등에게 전국적으로 폭넓게 보급되어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일반인들을 위한 “법의 생활화 운동”에 큰 기여를 해왔다.

1976년 초판 발간 이후 가족법개정이 있을 때마다 주된 내용을 정리하여 개정판을 냈고, 상담소 창립 60주년을 맞아 2013년과 2015년 개정된 친권, 후견, 입양관련 제도와 관련된 상담사례들을 대폭 수정·보완하고 전반적으로 체계를 혁신한 개정판을 낸 바 있다. 그리고 기존의 사례들 중 많은 부분을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상담사례들로 교체하고 관련 판례들을 소개하는 한편 2016년 및 2018년에 개정된 면접교섭권과 친생추정관련 규정 등을 반영한 2020년 개정 8판을 발간하였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의무, 책임을 다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한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아울러 다른 이들의 권리도 지켜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구성원 간의 모든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가족법에 대한 이해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책이 우리나라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생활지침서로써 필독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상담소는 가족법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면서 더불어 이 책의 수정·보완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순회상담의 경우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고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다른 부문도 점차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5월 6일 순회상담(전화상담) - 과천여성비전상담센터
- 복미영 상담위원

5월 20일 순회상담(전화상담) - 과천여성비전상담센터
- 김진영 상담위원

5월 20일 폭력예방교육 - 송의여중 전학년(온라인강의)
- 유혜경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손명진, 박슬기 변호사

2020년 5월 상담통계

총상담 4,709				
법률상담 (4,403)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986	3,292	118	6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180		63	63	

* 인터넷 정보 이용 45,012

2020년 5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709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403건(93.5%), 화해조정 18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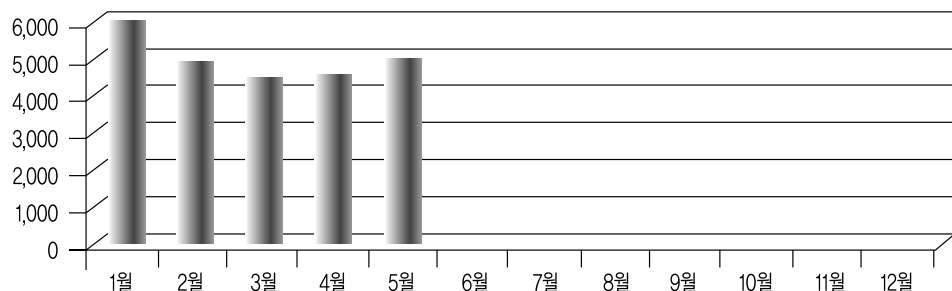
(3.8%), 소장 등 서류작성 63건(1.3%), 소송구조 63건(1.3%)이었다.

법률상담 4,40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0년 4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3%→0.4%), 부부갈등(3.9%→4.0%), 사실혼해소(1.1%→1.3%), 양육비(8.5%→9.5%), 인지(1.2%→1.3%), 친생자존부(2.3%→3.0%), 파혼(0.1%→0.3%), 혼인무효·취소(0.4%→0.5%), 유언·상속(5.8%→7.0%), 가족관계등록부(3.9%→4.6%), 친양자(0.8%→1.2%), 성년후견(2.1%→2.8%)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7%→1.0%), 개인회생(0.2%→0.3%),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폭력(0.0%→0.2%), 형사절차(0.5%→0.8%)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40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86건(22.4%), 전화상담 3,292건(74.8%), 인터넷상담 118건(2.7%), 순회상담 6건(0.1%),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0년
월별
총 건수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5월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분과회의에 참석하였다. 18일에는 서울가정법원 이혼사건 조정을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5월 22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고, 28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등 청구사건을 조정하였다.

곽배희 소장, MBC '뉴스외전' 출연 등

곽배희 소장은 지난 5월 9일 본소 이사이며 본소의 이혼에 관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김명순 이사가 운영하는 세은심리상담연구소 성수점 개소식에 참석,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함께 했다.



28일에는 MBC에서 방영되는 '뉴스외전'에 출연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가정문제에 관해 인터뷰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김정혜, 문은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소영, 강운영, 김수경, 김태주, 박다혜, 박수열, 박효선, 안서연, 이동규, 이주현, 이현정, 임방글, 형장우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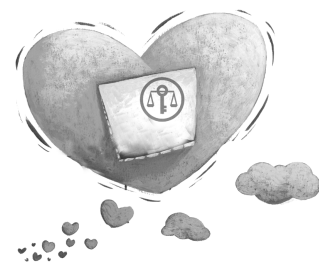
• 야간상담을 해 주신

이승주, 전성배,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전배우자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9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8세)은 지인의 소개로 사업을 하던 전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다. 전배우자는 사업자금 부족을 이유로 당시 주부였던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별 의심 없이 전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으나 전배우자는 그 대출금을 유흥자금으로 탕진하였다. 전배우자는 대출금의 행방을 묻는 신청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날이 갈수록 그 정도는 심해졌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신청인은 집을 나와 부모님 댁으로 피신을 하였고, 2019년경 전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소득활동을 하여 연체된 대출금을 갚고자 하였으나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어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 결국 신청인은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5. 4.)

채무자를 면책한다.

혼인 초부터 아내에게 폭력, 폭언을 일삼은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84

담당 : 강중협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피고(여, 34세, 반소원고)와 원고(남, 24세, 반소 피고)는 2018년 2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 초부터 피고와 사건본인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2018년 5월경 피고는 조산 위험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병문안 요청이 있어야 얼굴을 비추었고, 그마저도 게임 약속이 있다면서 병원에 오자마자 나가기 일쑤였다. 2018년 9월경 피고 생일날, 피고는 생일소원으로 원고의 금연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누구 때문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는데 그러냐?”고 화내며 집에 있는 술을 전부 꺼내 마셨고, 방문과 밥상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2018년 12월경 피고는 사건본인과 친정에 다녀왔는데, 집안이 엉망이어서 사건본인을 재우고 청소를 시작하였다. 잠에서 깬 사건본인이 울자 원고는 사건본인을 달래다가 청소 중인 피고를 향해 진절머리가 난다며 고함을 쳤다. 또한 원고는 사건본인을 두 차례 소파에 던졌고, 탁자를 어깨위로 들어 올려 피고를 향해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다. 이에 놀란 피고는 급히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행위들로 인하여 인천가정법원 부

천지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하였다. 위 사건 이후 피고는 사건본인과 함께 친정에서 거주 중인데, 오히려 2019년 3월경 원고가 제기한 이혼 소장을 송달 받았다. 이에 피고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7. 26.)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4. 9.부터 2037. 7. 10.까지 매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30%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자녀에게 무책임 태도로 일관한 부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등 조정**

법률구조 2019-357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인지청구 등

내용 : 원고(여, 39세)와 피고(남, 37세)는 2018년 2월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교제하였다. 2018년 11월경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낙

태를 고민하다가 사건본인(남, 1세)의 태동소리를 듣고 출산을 결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이후 모친과 누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사건본인이 더 중요하다며 원고와의 결혼을 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경솔하게도 자신의 모친과 누나에게 원고가 이전에 유산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험담을 하였다. 이를 들은 피고 모친은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며 급기야 약을 먹고 죽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낙태를 강요하였고, 2019년 1월경 원고가 출산 의지를 전하자 원고와 연락을 단절하였다. 2019년 7월경 원고는 자녀를 출산하였고, 출생신고 후 현재까지 혼자 양육 중이다. 이에 피고가 사건본인을 인지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며,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0. 1. 6.)

1. 피고는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한다.
2. 피고는 사건본인이 종전 성 “O”과 본 “OO”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월 2회,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7:00부터 19:00까지

나.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 위 면접교섭의 일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 조정, 변경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469

담당 : 김상균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2세)은 2005년경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가출로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였다. 2010년경 신청인은 생계를 위해 노점을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적어 적자에 허덕였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부업체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졌으며 결국 2018년경 채무만 떠안은 채 그만두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자녀가 입학한 주택에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신청인은 앞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5. 7.)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혼 후 남겨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0-28

담당 : 오유경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1세)과 피신청인(남, 41세)은 2004년 2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1세, 9세)을 두었으나 2013년 12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

다. 이혼을 하면서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를 피신청인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차량할부금 60만 원과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60만 원 등 총 12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금액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부족한 금액 지급을 미루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혼 전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의 카드 사용으로 발생시킨 채무를 갚지 않아 신청인이 이를 갚고 있었다. 이렇듯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남긴 채무를 갚으며, 어렵게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였다. 사건본인들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의 부담이 늘어났지만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마저 두절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창원지방법원 2020. 2. 20.)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방법원 2013호0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12. 16.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명령의 고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면접교섭을 핑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에 대한 직접지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0-92

담당 : 배향미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직접지급

내용 : 채권자(여, 44세)와 채무자(남, 47세)는 2002년 12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6세, 14세)을 두었으나 2014년 12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채무자가 지정되었으나 이후 친권자 변경 청구를 통하여 채권자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 6월부터 사건

본인 1인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지금까지 양육비를 단 한번만 지급하였다. 채권자는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사건본인들을 보살피고 양육에 최선을 다하였다. 채권자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월 100~15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본인들과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웠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채무자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하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얼마 전부터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 3. 10.)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말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지상·순회·인터넷·출장·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화해조정과 소장작성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 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다문화가정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외국변호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법률상담

화해조정과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운영

가족법 개정 운동

가정문제 예방 교육사업

“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에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법무부에 등록된 법률구조법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